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6. 4.(목) 14:01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표철수 부위원장
허 욱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01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김기석 행정법무담당관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기석 행정법무담당관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31차 및 제3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0-33-152)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방송시장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방송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광고판매 대행사업자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사에 대하여 거래 조건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내용은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정조치(안)로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대성 판단 관련하여 <1안>으로 중대성 약함과 <2안>으로 중대성 보통을 제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방송시장조사과는 2012년 이후에 중대성 약함 8회, 중대성 보통 1회, 중대성 강함 1회 등 총 10회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중대성 약함으로 판단한 사유는 최초 위반인 경우,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과거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시장상황 고려 등입니다. 동 사안의 경우 최초 위반이며, 과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방송광고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서 중대성 약함을 <1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필수적 조정 관련 사항입니다. 중요사안으로 위반기간이 짧은 행위, 비 중요사안으로 위반기간이 긴 행위 등 2가지 위반 행위기간이 다른 경우 위반 행위기간 관련입니다. 복수의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상이한 경우 위반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중요사안의 위반기간이 짧고 중요하지 않은 사안의 위반기간이 긴 경우 위반기간을 평균하거나 가중 평균하는 등의 방식이 피심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복수의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상이한 경우 위반기간이 긴 경우를 위반기간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위반기간이 긴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위반기간을 산정하겠습니다. 향후, 복수의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다른 경우 위반기간을 산정하는 보다 합리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최종 과징금 부분입니다. 기준금액에 가중·감경 사유를 종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최종 부과합니다. <1안>은 중대성 약함으로 50% 추가 조정하고, 30% 추가 감경해서 3,000만원으로 하는 안입니다. <2안>은 중대성 보통으로 50% 추가 조정하고, 30% 추가 감경해서 6,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첨

부분입니다. 형사고발 여부입니다. 방통위의 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 형사고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안은 형사고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은 통신 관련해서 중대하고 명백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다수의 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과징금의 부과를 수회 받았으나 금지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 형사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은 중대성 판단 기준 중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지난주에 이어서 KOBACO 금지행위에 대한 위반 여부를 한 번 더 심의하게 되었는데, KOBACO가 미디어법상 금지행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는 사무처 안건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KOBACO가 해당 행위를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본 바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1안>인 '중대성 약함'으로 의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KOBACO는 이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라고, 또한 사무처 역시 이번 안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규정 미비점 등을 적극 개선해서 향후 다른 미디어법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적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1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방송광고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KOBACO의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여러 모로 볼 때 논란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KOBACO 입장에서 볼 때 방통위 차원의 첫 징계이고 첫 조사를 받았습니니다. 상당히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을 계기로 KOBACO가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우리 위원회도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KOBACO의 정식 이름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입니다. KOBACO에서는 과연 그동안 얼마만큼 방송광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고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성에 대해서는 약함으로 하고, 형사고발하지 않은 안에 대해 동의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같은 의견이셨고,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이전에 KOBACO가 관장하던 업무는 지상파방송을 대상으로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매체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종편도 생기고 또 보도전문방송이 생기고, 또 SBS도 별도의 미디어랩이 생겼기 때문에 KOBACO의 영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KOBACO로서도 다른 미디어랩과 같이 경쟁해야 하는 환경적인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1안>에 동의합니다. 단지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신 바 있는데 위반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안건에도 추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 보완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이 안건은 KOBACO 설립 후 최초의 조사이고 심화된 방송광고 영업 경쟁 하에서 종편사 미디어랩과 달리 KOBACO와 SBS M&C만 결합판매 부담을 지고 있는 점, 그리고 위반행위가 처음 적발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는 중대성 약함인 <1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고발 사항이 아니라는 사무처의 판단 역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안건의 기본바탕이 되었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방송광고의 결합판매 지원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는 KOBACO의 지상파 광고 독점대행에 대한 2008년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2012년 미디어랩이 경쟁 체제로 전환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입법 당시에도 결합판매 제도가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방송과 중소라디오방송의 매체 간 균형발전과 지역성·다양성 제고라는 공적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공적부조의 성격을 띠고 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12년 2조 1,830억원이던 지상파 광고의 매출액은 지난해 1조 950억원으로 49%나 떨어졌고, 결합판매 광고매출 역시 2010년 2,48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250억원으로 51%나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급기야 지난 4월에는 위헌심판 청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복수의 미디어랩 신설로 경쟁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지상파와 종편사간 매체 경쟁력이 미디어랩에 그대로 전이되어서 방송광고판매의 실질적인 경쟁은 오히려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성과 다양성이라는 공적가치를 지키기 위해 결합판매의 짐을 지고 있는 KOBACO나 SBS M&C와 달리 종편은 부담이 없고 보도PP나 tvN 등은 직접 영업을 하는 비대칭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PC와 모바일 등 유·무선 온라인 광고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KOBACO나 SBS M&C는 방송광고대행 영역의 제한을 받고 있어서 통합마케팅과 광고영업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방송광고시장을 반영해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설계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더불어 KOBACO 또한 과점적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졌던 기존 영업 관행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영업방식의 혁신을 꾀하는 환골탈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사무처에서 제시한 안 중 <1안>에 찬성하는 의견이고, 고발조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첨언을 하자면 기준금액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 추가 감경을 거쳐 최종적인 처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지는데, 필수적 조정 부분이나 기준금액은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 조정이나 추가 감경 부분은 나름 재량 판단이 가능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필수적 조정 부분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가중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가중의 기준이 명백하고 명확하게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에는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한 것이고, 기존 관례에 따라 필수적 조정을 50% 가중으로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향후에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첨언하자면 금지행위 위반 등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것도 행정청의 권한이고 그 권한에 따라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올바른 시장환경이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위원회가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한 이런 업무처리에 대해 뭔가 기준을 설정해서 제시하고 합법적이고 온당한 업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 또한 위원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하시고, 저 역시 위원님들과 같은 의견으로 <1안>에 동의하고, 형사고발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0-33-153~161)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63조제2항 및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9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 제64조의3, 제76조제1항·제2항 및 위치정보법 제14조제1항, 제43조제2항에 의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조사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조사배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위반소지가 인지된 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나> 조사대상 9개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요경과입니다. 사실조사는 2019년 1월~8월까지, 사전통지 및 의견접수는 2019년 4월~9월까지 했습니다. <4> 조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개요

입니다. 나쁜기억지우개(주) 등 9개사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나쁜기억지우개(주)는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2가지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나> 사업자 일반현황입니다. 나쁜기억지우개(주)는 나쁜기억지우개라는 익명으로 청소년 고민 상담을 나누는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넥슨코리아는 온라인게임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주)신세계디에프는 온라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주)은 이동통신, 에스이십사(주)는 온라인 도서 판매, (주)와이비엠넷은 온라인 교육서비스입니다. (주)이베이코리아는 지마켓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처음소리는 온라인 육아용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케이티는 이동통신사입니다. (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 및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넥슨코리아는 설문조사 이벤트 과정에서 담당자의 설정 실수로 이용자의 아이디 914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주)신세계디에프는 담당자가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메일로 통보할 때 메일서버 용량을 초과하여 장애가 발생, 개인정보 673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유출항목은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입니다. 에스이십사(주)는 미상의 해커가 사전대입공격으로 14명의 이용자 계정을 이용하여 상품구매를 시도한 건입니다. 성명, 주소, 이메일, 이동전화번호 등 14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와이비엠넷은 담당자가 전체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받는사람' 란에 기재하고 발송하여 타인의 이메일 주소 1,613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주)이베이코리아는 2가지 사안인데, 미상의 해커가 사전대입공격으로 이용자 계정 15만여 건을 로그인 했지만 유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킹사고 이후에 기프트카드 주문 관련 페이지에 이용자 폭주로 인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여 타인의 개인정보 2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주)처음소리는 미상의 해커가 개인정보를 탈취하였다고 알려왔으며, 사업자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웹로그 부재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 위반사항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위반한 사업자가 1개사,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 사업자가 1개사,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위반이 1개사,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위반한 사업자가 중복 포함해서 모두 4개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접속기록 위반한 1개사,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법정대리인의 동의 위반, 국외 이전 고지 위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신고 위반 등이 모두 1개사입니다.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위반 등은 2개사가 있고,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위반 사업자가 2개사입니다. <5> 사업자 의견 및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기억지우개(주)는 이용자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이용자 게시글은 이용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한 것으로, 삭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회사와 이용자 간의 약관과 계약 규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수용했습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앱 최초 실행 시에 게시글이 24시간 내에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알리고 있지만 실제 삭제하지는 않고 DB상에 보관하고 있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주)은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위반 지적과 관련하여 위치정보법 제 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 명시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주체로부터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수용했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가입신청서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상에는 개인위치정보 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방법,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은 것은 이용자가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서 불수용했습니다. 에스이십사(주)는 개인정보 유출사실 관련하여 이용자의 계정으로 해커의 부정접속이 확인된 ‘에스머니’ 페이지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으며, 해커는 제품구입 시에 매크로를 사용하여 ‘배송 주소’를 해커 자신의 주소로 변경하였을 뿐 이용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해커가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주소의 형태를 확인하였을 때, 자동화 명령으로 주소가 두 번 입력되어 있는 등 해커가 직접 로그인하여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형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주)이베이코리아는 ‘18년 8월 사전대입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실과 관련하여 유출사고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예방 조치를 하였으며, 사업자의 지배영역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탈취된 것이 아니므로 과징금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대입공격에 의해 로그인에 성공했지만 개인정보 유출경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의견은 수용했습니다. 또한 ‘19년 1월 개인정보 유출사실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접속하는 웹페이지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포함되지 않고, 프로그램 오류로 일시적으로 일어난 개인정보 조회 오류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수용했습니다. 배송정보 조회페이지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고, 이용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출 인지 후 즉시 조치하여 피해 규모가 적은 점과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발생한 점 등을 처분 시 고려했습니다. (주)케이티는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위반 지적과 관련하여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이 구체적인 동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가입신청서를 통해 이용약관 대강의 내용과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안내하고 동의받았으며, 가입신청서에 이용약관의 내용을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요약하여 명시할 의무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수용했습니다. 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상에는 위치정보 수집방법, 서비스 내용만 표기되어 있어 이용자가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동의 받은 ‘가입신청서’상에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과 제1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시정조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입니다. <가> 시정명령은 나쁜기억지우개(주) 등 7개사에 대해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명하고자 합니다. 위반행위 즉시 중지, 대표자를 비롯하여 책임자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입니다. <나> 과징금 부과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및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나쁜기억지우개(주)와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주)넥슨코리아 등 4개 사업자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나쁜기억지우개(주) 등 5개사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를 시정명령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나쁜기억지우개

(주)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 많지 않아 과징금 부과에 실효성이 없고, (주)넥슨코리아는 설문조사 이벤트 중 담당자의 실수로 메일주소가 노출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주)이베이코리아는 미상의 해커가 로그인하였으나 웹로그 부재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그리고 프로그램 오류 발생으로 개인정보 2건이 유출되었지만 피해사실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예스이십사(주)는 미상의 해커가 사전대입공격으로 상품구매를 시도하였지만 웹로그 분석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주)처음소리는 웹로그 부재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 과태료 부과는 나쁜기억지우개(주)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 9] 및 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을 위반한 나쁜기억지우개(주)입니다. 기준금액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관련해서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고, 조사 과정 중 법규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나쁜기억지우개(주)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통지를 위반한 (주)신세계디에프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과태료 가중·감경에서 특별히 가중·감경할 사유는 없습니다. 최종과태료는 (주)신세계디에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주)넥슨코리아 등 4개사업자입니다. 기준금액입니다. (주)넥슨코리아 등 3개사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각 적용하고, 예스이십사(주)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2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의 가중입니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인 (주)처음소리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가중하고, 감경 관련해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한 (주)넥슨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감경하고, 예스이십사(주)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인 1,0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태료는 (주)넥슨코리아, (주)이베이코리아 등 2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각 부과하고, (주)처음소리에 대해서는 과태료 800만원, 예스이십사(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예스이십사(주)입니다. 기준금액은 1,0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의 가중·감경 관련해서 가중할 사유는 없고,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최종 과태료는 예스이십사(주)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공개·고지를 위반한 (주)와이비엠넷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가중·감경 관련해서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고,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주)와이비엠넷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라> 고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9조의2 및 고발 기준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고발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마> 수사기관 이첩사항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달성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활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1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나쁜기억지우개(주)는 이용자에게 앱 최초 실행시 “작성한 글은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며 당신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알리고 있으나, 2017년 3월 8일 이후 작성한 이용자의 글 480여만건을 DB에서 삭제하지 않고 2019년 1월 10일까지 보관하고 있어, 고발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DB에 보관 중인 이용자 게시글은 조사 과정에서 모두 파기토록 했습니다. 또 게시글 내용에 따라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조사 당시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분류해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수사기관 이첩까지는 조사관이 예상을 못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이첩 여부를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 기타 사항입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나쁜기억지우개(주)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바우처 지원사업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등록·공개한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바우처 지원사업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업적격 여부 심사 시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심사를 강화하도록 문서로 통보하고자 합니다. <6-2>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과징금 부과대상은 에스케이텔레콤(주) 등 3개사입니다.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중요사항이 일부 누락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로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와 같은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서비스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나쁜기억지우개(주), (주)케이티에 대하여 위치정보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 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 대상사업자는 에스케이텔레콤(주)과 (주)케이티 2개사입니다. 먼저 에스케이텔레콤(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중요사항이 누락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로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에스케이텔레콤(주)에 대하여 위치정보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 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할 경우 위치정보사업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많아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은 에스케이텔레콤(주)의 위치정보사업 관련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을 5억 4,194만 8,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3년간 매출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정지 기간입니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1차 위반으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해당하나 법에서 정한 명시사항을 모두 포함한 전체 이용약관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는 점, 이전에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스케이텔레콤(주)에 대해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사업정지 1.5개월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 과징금은 위치정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주)에 대해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세부산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케이티입니다.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중요사항이 일부 누락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로 이용자에게 동의 받고,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타겟문자 서비스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주)케이티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 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할 경우 위치정보사업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많아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은 (주)케이티의 위치정보사업 관련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을 5억 4,970만 4,000원으로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을 28억 462만 8,000원으로 각 산정했습니다. 매출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정지 기간입니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라 1차 위반으로,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정지 각 3개월 처분에 해당하나, 법에서 정한 명시사항을 모두 포함한 전체 이용약관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는 점, 이전에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케이티에 대해 처분의 기준 2분의 1을 감경하여 사업정지 각 1.5개월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최종과징금입니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별표 4] 에 따라 (주)케이티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위반 410만원, 위치기반서비스 위반 2,100만원을 각 부과하여 과징금 총 2,51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나쁜기억지우개(주)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자 합니다. 나쁜기억지우개(주)는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동의 받아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할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많아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치정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 3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쁜기억지우개(주)의 위치기반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별도로 매출액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주)케이티 등 2개사에 대해 하겠습니다. 위치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별표 5] 와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용약관 명시 의무를 위반한 (주)케이티와 나쁜기억지우개(주)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각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 가중·감경 관련해서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고,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150만원을 각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케이티와 나쁜기억지우개(주) 2개사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각 부과하고자 합니다. <라> 고발 사항입니다. 나쁜기억지우개(주)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어 고발할 수 있으나, 청소년 자살예방 및 고민상담 등을 위해 근처 청소년상담센터로 연결해 주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조사 이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고자 합니다. <마> 기타 사항입니다. 위치정보법상에는 시정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나쁜기억지우개(주) 3개사에 대해서는 위치정보보호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및 대표자를 비롯한 위치정보관리책임자·위치정보취급자에 대해 교육 실시결과를 포함한 위치정보보호 대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개선 권고하고자 합니다. 최종 과태료와 과징금 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총 5,200만원, 과징금은 총 2,910만원이 되겠습니다. <7>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조치 통보는 7월에, 이행점검은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이 안건은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보고된 9개 위반사업자 가운데 7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법규를 잘 지키고 있을 것이라 여겼던 대기업들입니다. 개인정보 법규 위반사업자는 (주)신세계디에프나 (주)이베이코리아, (주)넥슨코리아, 에스이십사(주), (주)와이비엠넷 등이고, 위치정보 법규 위반사업자도 (주)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주) 등이 상정되었습니다. 매출액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에 달하는 대기업들이 해커의 아이디, 패스워드 대입공격의 허점이 노출되거나 설문조사 또는 대량 이메일 발송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담당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온라인 비대면 소통과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을 병행 운영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KT, SKT와 같은 우리나라 최대 기간통신사업자가 중요사항이 누락된 신청서나 계약서로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즉시 시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결을 통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다시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나쁜기억지우개(주)의 경우 익명으로 청소년들이 고민을 나누도록 하고, 게시된 고민은 24시간 후에 바로 삭제하겠다는 당초의 약속과 달리 480만여건의 이용자 글을 2년 가까이 보관해 오다 적발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글들을 데이터스토어에 판매하려고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결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서 비록 스타트업 기업이기는 하지만 이 업체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액 산정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위원님께서 의결주문에 동의하는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사무처 안에 이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위치정보법 위반사항에 대해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통신망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KT와 SKT 두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가입자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서 과징금 부과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사실 이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큰 덩치에는 그 덩치에 걸맞은 아주 엄격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록 두 사업자 모두 위반사실이 지적된 즉시 바로 개선했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밀접하게 수집·이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절대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시정조치가 다른 위치정보사업자들도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

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이번 위반사업자들을 보면 해커에 의한 공격도 있지만 상당수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이른바 담당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유출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관심을 모으는 것이 나쁜기억지우개(주)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자살예방 고민상담을 위한 회사인데, 하여튼 넓게 본다면 이 케이스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상충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데이터와 관련해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앞으로 데이터 3법이 시행된 후에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할 때 이런 위반 건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이번 사례가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유사 유출사고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와 데이터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입니다. 개정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쁜기억지우개(주)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원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2017년 3월 8일 이후 작성한 이용자의 글이 488만 7,677건이 DB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다, 보관되고 있다, 그래서 고발기준에 따른다고 하는데 지금 480만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상당수가 위법이 아니라 무슨 댓글이 될 텐데….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럴 가능성도 많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그러면 이첩했을 경우 실효성이 있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실효성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없다고 보인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안형환 상임위원**

- 기준에 따른다고 하지만 480만건이 넘는 건을 수사기관에 넘겨서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SKT와 KT는 최초

위치정보 허가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의하고 또 대기업이니만큼 잘 보완했어야 하는데 이런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이니만큼 앞으로 향후 고객의 개인정보, 위치정보보호 업무에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하셔서 저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안영환 상임위원**

- 수사기관 이첩 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480만건이 넘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경찰에 이첩하는 사안들이 아니다. 여러 가지 업무 상황이나 기준으로 보면 종전 수사기관에 이첩했을 때 수사 결과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건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사업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오히려 스타트업 기업에게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수사기관 이첩은 이번 건에 한해서는 유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표철수 부위원장**

- 그 부분 저도 존경하는 안영환 위원님, 또 허 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480여만건의 이용자 글이 DB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황이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이 수사기관에서 복구하면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그 부분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될지 여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글 자체 모두가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주 짧은 글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혼재되어 있을 텐데 저희가 조사 당시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480여만건의 이용자들 글이고 그 안에 혹여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미 조사 과정에서 DB에서 모두 삭제했다는 취지인데, 만약 삭제되었다면 이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허 위원님과 안 위원님께서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한 원안에 대해서는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도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 표철수 부위원장

- 예.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정리를 하자면 처분 대상사업자에 대한 각 처분, 즉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여부, 수사기관 이첩 등 사후 처리에 관한 사무처의 원안 중 나쁜기억지우개(주)에 대한 수사기관 이첩 관련 건을 제외한 나머지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에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안건 내용 중 수사기관 이첩 관련 부분만 수정한 상태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상임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된 안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47분 폐회 】